

여성민우회 동일노동임금 심포지엄

동일노동 동일임금(동노동임) 청구소송과 동노동임 실현을 위한 특별예산 배정 요구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동노동임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국여성민우회(회장 한명숙) 주최로 5일 저녁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88년 4월1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동노동임 원칙이 규정돼 있음에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 원인과 대안 등을 모색했다.

보다 확대적용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조순경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는 '동노동임 요구의 의의' 주제발표를 통해 "동일가치노동의 구체적인 기준설정과 공정한 평가방법 마련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과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노동가치의 재평가 △성차별 임금의 주원인인 직무등급과 직무체계를 다변화시킨 신

동임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조합원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방법을 통해 △동노동임 실현에 소극적인 남자직원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단체교섭을 통해 회사에 알맞은 직종배치 기준과 노동가치 평가기준을 설정,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 변호사는 강조했다.

주제발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대부분 직장여성인 참석자들은 "동노동임의 실현은 '남

동일노동의 구체적 기준 설정돼야

업무·직종차별 취업규칙 개선 급선무 노조 조합원 교육통해 의식 일깨워야

특히 이날 오전, 연세대 청소원으로 있는 남길자(45)씨가 국내에선 최초로 90년 5월 대학을 상대로 낸 동노동임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패소, 항소 준비와 함께 동일가치의 노동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 단독재판부가 이날 "원고 남씨가 말아온 옥내청소작업은 옥외청소·세차·야간경비 등 남자 청소원의 업무와 동일한 가치의 노동으로 볼 수 없다"고 남자청소원의 업무를 동일가치의 노동

인사제도의 철폐 △직무평가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차별임금의 해소방안을 제기한 이은영 교수(외대 법학과)는 "남녀간에 같은 질의 일을 같은 양만큼 하는 경우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책임 업무로부터 여성을 제외하는 업무·직종차별, 취업규칙 등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동노동임 청구소송의 과제를 짚어본 조영환 변호사도 동노

성들의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자임을 해결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1항에 규정된 동노동임 원칙이 지켜지도록 정부와 기업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기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만들어 달라" "동노동임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와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배정해줘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아 동노동임에 대한 여성들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신연숙 기자〉